

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. 09. 07(화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4. 12. 21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04. 12. 23(목)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4. 12. 23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환경복지과장 최호영)

가. 제안이유

- 유사목적의 기초생활보장기금, 장애인복지기금, 노인복지기금, 여성발전기금을 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로 통폐합, 각 기금 계정별로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
- 운영성파가 미흡한 저소득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를 폐지하며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기금 운용의 합리화도모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관리(안 제4조)
 -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,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, 장애인복지계정, 노인복지계정, 여성발전계정으로 구분,
 - 각각 별도 계좌로 설치관리
-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 수립(안 제6조)
-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(환경복지과장)을 두고 각 계정별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둠(안 제7조)

-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해 평창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설립
(안 제9조 내지 14조)
 - 공무원 및 민간인등 15명
-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각 계정별 단위사업을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기금을 보조하여 추진할 수 있음(안 제15조)
-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의 이차보전대상은 금융기관 등에서 대여받은 자금이 2천만원 이하며, 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 기간 중에 한하고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이자율의 15% 범위 내에서 한다.
(안 제17조)
-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한도액은 2천만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사업자금은 1천만원 한도며, 대여금 상환은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대부이율은 연 2%, 연체이자율은 연5%의 이자로 한다.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거치 기간 이자를 무이자로 한다(안 제19조)
-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,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조례, 평창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,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,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함(안 부칙제2조)
- 기 용자된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중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회수하되 기금 및 회수액 수입은 기초생활보장계정의 기금으로 하며,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, 장애인복지기금, 노인복지기금, 여성발전기금은 각 계정의 기금으로 한다(안 부칙제3조)
- 기 용자된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중 대여자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는 용자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(안 부칙제4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가.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, 노인복지법 제4조, 장애인복지법 제5조 및 제45조,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등 개별법령에 의거 설치되어 운영되어오던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,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, 평창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,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등 유사 조례의 통폐합과 함께 운영성과가 미흡한 평창군저소득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하려는 조례로써 사회복지 분야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적 관리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나.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○ 먼저,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있어 폐지되는 각각의 조례에 의해 기 설치·운영되고 있는 계정을 통합하지 않고 별도의 계좌로 설치 관리 함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고,

○ 5개의 조례가 1개의 조례로 통폐합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막대한 기금예산의 관리 운용을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그 동안 각종의안 심사를 통하여 평창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통폐합 운영등을 주문한 만큼 위원회 구성, 기능 회의 등에 있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다음 기금의 지원부문입니다.

기초생활보장계정의 자금대여 및 상환은 점차 어려워지는 국내경기와 더욱 힘들어지는 기초생활보장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여금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2년거치 2년균분 연5%에서 3년거치 3년균분 연2%로 하향조정하였고,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의 연체이자도 연8%에서 연5%로 하향 조정하였으며, 기타계정의 경우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○ 마지막으로 부칙부문입니다.

- 5개의 조례가 폐지되는 만큼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폐지되는 조례에 따른 각각의 규칙과 기금심의위원회 폐지 및 신설되는 조례의 규칙 제정과 운영을 담당할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조속히 이루어져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○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 끝.

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4년 12월 23일

제안자 :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수정사유

- 5개의 기금이 통합되어 운용되는 사회복지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있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의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기로 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11조의 제3항 제3호를 제4호로, 제2호를 제3호로,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1. 군의회 의원

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의 제3항 제3호를 제4호로, 제2호를 제3호로,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군의회 의원

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1조(구성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. 기초생활보장· 장애인·노인·여성복지분야의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 자 3.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	<p>제11조(구성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군의회 의원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. 기초생활보장· 장애인·노인·여성복지분야의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 자 4.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